

I. 미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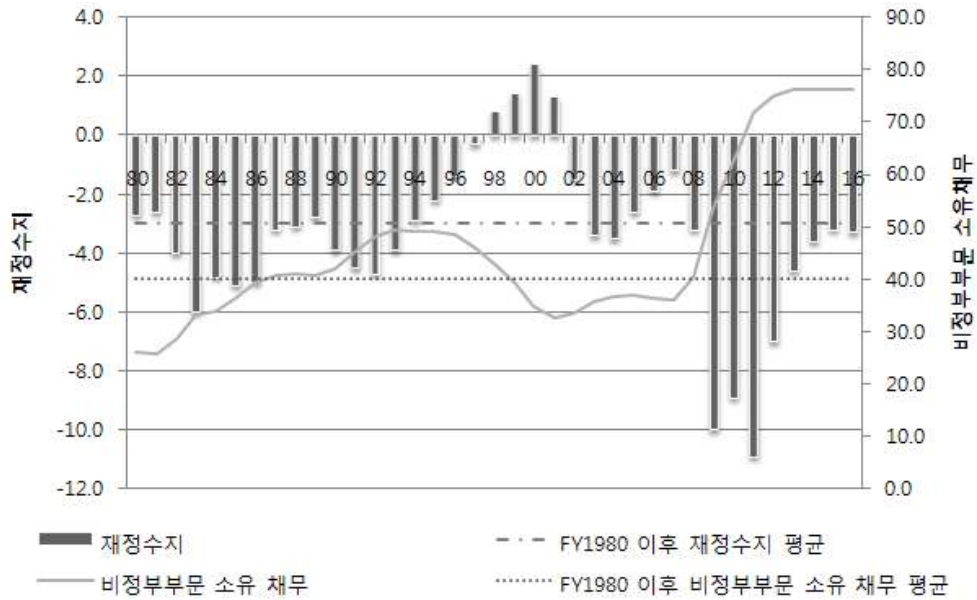
1. 재정추이

□ 그간 미국은 FY1980 이후 FY2010까지 GDP 대비 평균 재정수지가 -3.0%에 불과할 만큼 비교적 양호한 재정수지 관리가 이루어져 왔음

- 최근 있었던 금융위기 전까지 FY1980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는 FY1983의 GDP 대비 6%
- FY1980~FY2010까지 31년 동안 GDP 대비 3.0% 이상 재정적자는 모두 16회

[그림 1-1] 미 연방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1. 회계연도 기준

2. FY2011~FY2016: 전망치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 '06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 침체와 '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불거진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재정수지 악화

○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부실자산 매입 및 지급보증,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

* GDP 대비 재정수지(%): (FY2006) -1.9 → (FY2007) -1.2 → (FY2008) -3.2 → (FY2009) -10.0 → (FY2010) -8.9

○ 이에따라,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도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증가 추세

* GDP 대비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FY2006) 36.5 → (FY2007) 36.2 → (FY2008) 40.3 → (FY2009) 53.5 → (FY2010) 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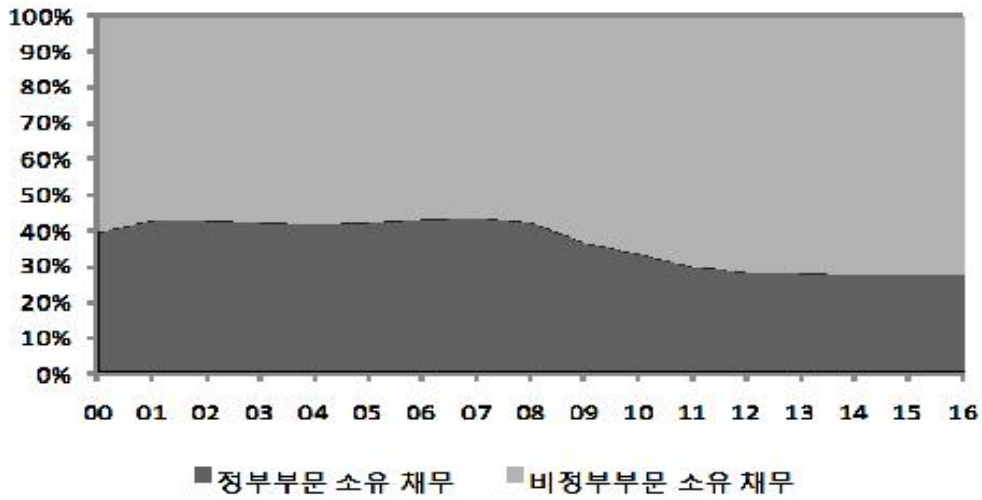
□ FY2009년 이후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 및 부채 증가로 미 정부는 단기 재정수지 개선과 함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

○ 부채수준의 경우 부채의 1/3 정도를 미국 정부부문이 소유하고 있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여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향후 부채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채에 대한 관리 필요

[그림 1-2] 미 연방정부 부채 구성비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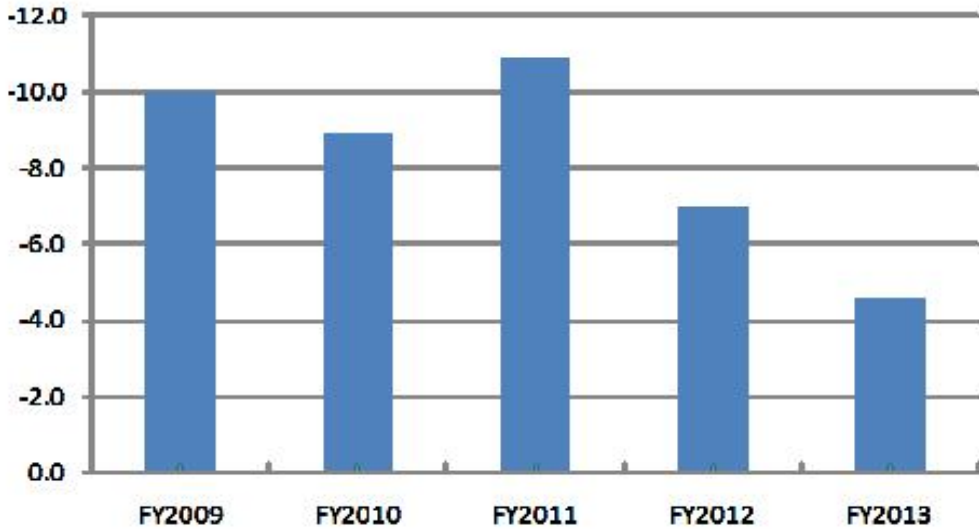
주: 1. 회계연도 기준
 2. FY2011~FY2016: 전망치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2

2. 재정건전화 방안

-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급증한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대책을 제시
 - 취임 직후인 '09. 2월 제시한 FY2010 예산안에서는 현재까지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

[그림 1-3]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 재정적자 절반 감축 목표

(단위: GDP 대비 %)



주: 1. FY2011~FY2013: 전망치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 이를 위해 복지지출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재정사업 통합 방안 마련,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등을 제안

- 단기 재정적자 개선 목표와 더불어 복지급여 지출 증가 문제 해결 등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90년대 재정수지 흑자 달성에 기여한 PAYGO 원칙 도입 및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 논의를 위한 재정위원회 설립 등 책임있는 재정정책을 위해 노력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금융기관에 금융위기 책임금 부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폐지 등을 세입증대 방안으로 행정부에서 제안
 - 금융위기 이후 미 정부가 제안해온 세입증대 방안은 대체로 일관적인 모습
 - 다만, 고소득자들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감세법을 예정대로 종료시키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작년 12월 전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연장조치로 무산
 - 이번 FY2012 예산안에서는 작년 12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과 유산세를 기한대로 종료하고,
 - 대체최저한세(AMT)를 2014년까지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항목별 공제한도를 28%로 제한하여 AMT 연장으로 감소된 세입을 상쇄

<표 1-1> FY2012 예산안의 주요 세입증대 방안

(단위: 십억달러)

세입증대 방안	내용	세수증대 규모 ¹⁾
금융위기 책임금 부과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에 부과	30
수퍼펀드세 (Superfund tax) 부활	1995년 만료된 수퍼펀드세를 2012~2021년까지 특정 에너지 및 제조업체에 부과	20.8
고용보험 부가세 영구화	2011년 7월부터 고용주의 고용보험 부가세율이 0.2%p 인하되는 것을 현행대로 유지	15
국제조세체계 개혁	미국계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와 조세회피 방지	129.2
화석연료 관련 세제혜택 폐지	석유, 가스, 석탄회사에 부여하는 세제혜택 폐지	46.1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하여 과세	“services partnership interest”로 지정된 파트너십 지분을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14.8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고소득층(부부합산: 25만달러, 독신: 20만달러)에 대해 항목별 공제한도를 최대 28%로 제한	321.2

주: 1) 향후 10년(FY2012~FY2021)간의 규모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2

2)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 '10. 12월 재정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법인세의 경우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개선 등을 권고
 - 2012년까지 세율을 인하하고, 재정적자를 감축하며, 조세관련 법령을 간소화하는 근본적인 조세 개혁안을 수립하도록 요구
 - 모든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 축소와 늘어난 세수의 일정 부분은 재정적자 감축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세율 인하와 필수적인 조세지출 및 세액공제에 충당
 -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최고세율은 23~29%가 되도록 감축
 - 2015년 800억달러, 2020년 1,800억달러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할당

-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은 근로, 주거, 보건, 기부금, 저축 장려를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소득세 누진도는 현행 유지 또는 증대
 -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되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원천지주의 과세 제도로 이행함
 - 23~29%의 단일한 법인세율을 설정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조세감면제도를 철폐
 - 보다 경쟁력 있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로의 이행을 권고
 - 신속한 조세개혁 도입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도입
 - 의회와 행정부가 2013년까지 조세개혁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면적인 조세지출 삭감을 취하는 등 안전장치 도입
- FY2012 예산안에서 국제조세체계 개혁을 통해 미국계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와 조세회피 방지 정책 수립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복지사업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 등의 재정정책 시행
- '10. 7월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 발효
 - 이 법에 따라 연방기관은 프로그램의 연간 리스크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 대상 프로그램의 유형을 확대하여야 함
 - 이에 따르지 않는 연방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할 것임을 규정
-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매년 재정사업 통폐합 방안을 예산안에서 제안

- 동 통폐합 방안은 FY2010의 경우 정부가 제안한 재량지출 삭감규모의 60%를 의회가 승인
- FY2012 예산안에서는 200여 개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을 통해 FY2012에만 총 330억달러의 예산절감 계획
- FY2011 예산안과 FY2012 예산안에서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을 제안
 - 아직 FY2011 예산안이 의회승인을 받지 못한 관계로 행정부 제안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
 - FY2012 예산안에서는 FY2015년까지 비안보 재량지출을 동결하여 향후 10년간 약 4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표 1-2> FY2012 예산안의 주요 재정건전화 정책

(단위: 십억달러)

재정건전화 정책	내용	예산절감 효과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비안보 재량지출을 FY2015까지 동결	FY2012~FY2021: 406
공무원 임금 동결	FY2011과 FY2012의 공무원 임금 동결	FY2011 잔여기간: 2
재정사업 통폐합	200여 개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	FY2012: 33
국방지출 삭감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 계획에서 삭감	FY2012~FY2016: 78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2)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 PAYGO 원칙 도입, 신속재원 폐지(expedited rescission) 권한 요구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을 제안
 - '10. 2월 PAYGO 원칙을 규율하는 PAYGO 법이 대통령의 서명을 마치고 효력 발생
 - PAYGO 원칙은 신규 법정지출이나 세입감소 정책에 대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지출감소 혹은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 동 원칙에 위배되었을 시에는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PAYGO 원칙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 법정지출 프로그램에 일률적인 삭감 조치 시행
- FY2011 예산안에 이어 FY2012 예산안에서도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재원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는 신속재원 폐지 권한을 제의
 - '10. 5월 정부입법안 제출 이후 FY2012 예산안에서도 대통령의 신속재원 폐지 권한 요구
- '10. 12월 재정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량지출 삭감방안, 보건의료비용 인상 억제, 법정지출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의 방안이 논의됨
 - (재량지출 삭감) 2020년까지 재량지출의 상한을 설정, 안보지출 및 비안보지출 모두 삭감 등
 - (보건·의료지출 억제) 고령자·장애자 의료보험의 경우 의료수가 동결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장률(SGR) 체제 개편, 전체 의료보호 지출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증가율을 GDP+1%로 제한
 - (법정지출 개선) 연방공무원과 군인의 의료 및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2020년까지 700억달러의 예산을 감축
 - 농업보조 프로그램의 순지출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달러 감축하되, 농업 재해기금은 확충하고 농업위원회에 관련된 기금의 재조정을 허용
 - (사회보장제도 개혁) 퇴직연금 공식을 보다 누진적으로 변경하고, 조기퇴직과 일 반퇴직연령을 기대수명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논의